

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·해제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※ 해당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일		
신청인 (대표자)	성 명	생년월일						
	주 소	전화번호						
대상시설	공동주택명							
	소 재 지			면 적(㎡)				
	거주세대			개동 / 세대				
금연구역 지정	① 복 도 []		② 계 단 []		③ 엘리베이터 []		④ 지하주차장 []	
주민 동의 결과	찬성	반대	찬성	반대	찬성	반대	찬성	반대
금연구역 해제	① 복 도 []		② 계 단 []		③ 엘리베이터 []		④ 지하주차장 []	
주민 동의 결과	찬성	반대	찬성	반대	찬성	반대	찬성	반대

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시
제출서류

1.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
2.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(해제)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(해제)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(공동주택의 복도·계단·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합니다). 이 경우 해당 지정(해제)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(해제)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.
3.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
4.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·계단·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
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(해제)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정	→	공 고
신 청 인		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		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		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		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